06_02. 기계 조작 중에 기계에 다친 사고

1) 프레스에 다친 경우

판결요지	피해자 측과실	사건번호
[사고발생경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프레스공이 작업을 끝낸 후 다른 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프레스기에 설치된 금형의 제품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금형을 살피면서 왼손을 금형의 윗부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금형의 오른쪽을 잡아 돌려 제품번호를 찾으려 하다 실수로 풋스위치를 밟아 프레스가 하강하면서 왼손을 압착함. [사용자측 과실] 풋스위치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평소 사용하지 않다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탁할 때 풋스위치를 분리시키거나 풋스위치가 분리되지 않았음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풋스위치가 아직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	50%	대구고법 2002나6631
[사고발생경위] 현장실습 중인 고등학생이 프레스기에서 피고회사 직원의 조수로서 성형된 자동차 부품을 꺼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른손이 프레스기의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이드판에 끼게 됨. [사용자측 과실] 직원은 현장실습 중인 고등학생이 정하여진 작업 위치에서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함에도, 정하여진 작업위차가 아닌 자신의 작업방향 오른쪽에서 오른손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방치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현장실습생으로서 직원의 작업상의 지시, 감독에 충실히 따르면서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채 정하여진 작업위치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한 과실.	50%	서울고법 2002나21877
[사고발생경위] 자동차부품 회사의 프레스 공이 작업에 편하다는 이유로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끄고, 양수 조작식 작동스위치의 한쪽 부분을 쇠 조각으로 고정하여 오른손만으로 눌러도 작동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작업을 하던 중, 부품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왼손을 넣었다가 미처 빼내기 전에 오른손으로 작동스위치를 누르는 바람에 상부금형이 내려와 왼손이 협착됨 [사용자측 과실]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상태에서작업을 하도록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작업과정을 감독하여 그 준수 여부를 점	50%	대구고법 2002나3595

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능률이 오른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끄고 작업을 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작업에 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안전장치를 끄고 작업을 한 과실		
[사고발생경위] 1달에 20일 정도 직접 프레스 작업을 하는 생산부 차장이 전자감응식 안전장치가 고장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프레스 작업을 하다 왼손이 프레스기의 상·하금형 사이에 압착됨. [사용자측 과실] 안전장치가 고장났다는 보고를 받고 안전장치를 고치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생산직 책임자로서 안전장치를 수리한 후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한 과실.	60%	대구고법 2001나5549
[사고발생경위] 주로 포장일을 하던 사람에게 트렉터 날의 불량부분을 교정하기 위하여 프레스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프레스기에 왼손이 눌림. [사용자측 과실] 주로 포장일을 하던 사람에게 프레스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며, 프레스 작업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지 아니한 과실.	35%	대구고법 2001나7064
[사고발생경위] CS프레스기를 사용하여 가스켓 평탄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기의 하부금형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빼내기 전에 작동페달을 밟는 바람에 상부금형이 내려와 손이 압착됨. [사용자측 과실] 아전장치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작업과정을 감독하여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반장이 안전장치를 높이 올려놓아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안전장치의 높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30%	서울고법 2001나39901
[사고발생경위] 프레스기에 금형을 설치하고, 프레스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등 생산현장의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이 잘 모르는 최신형 유압프레스기를 수리하던 도중, 충격	80%	서울고법 98나67319

완화용 스프링 중 한 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왼손에 푸트 스위치를 들고 광전식 안전장치가 감지할 수 없는 프레스기의 측면으로 오른손을 넣어 위 스프링을 세우려는 순간 푸트 스위치를 잘못 눌려 오른손이 압착됨. [사용자측 과실] 푸트 스위치는 양수조작식 작동스위치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안전장치가 감지할 수 없는 측면으로 손을 넣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계를 수리하도록 지시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전원을 차단하거나 안전한 도루를 사용하지 않은 채 위험한 푸트 스위치를 손에 쥐고 안전장치가 감지할 수 없는 방향으로 손을 집어넣은 과실.		

2) 기타 기계에 다친 경우

판결요지	피해자 측과실	사건번호
[사고발생경위] 용접공이 가스관 연결을 위한 용접작업 중, 종전에 작업한 용접부위에 용접기의 전류조정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스관의 측면에 우측 손을 짚고 좌측 손으로 전류조정기를 치우던 과정에서 가스관을 이동시켜 주는 가이드 롤러와 가스관 사이에 우측 손이 협착됨 [사용자측 과실] 가이드 롤러 주위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가스관의 이동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30%	서울고법 2003나9140
[사고발생경위] 기계공이 우레탄원단 제조작업 시범을 보이던 중, 2, 3번 롤러 사이에서 올라오는 원단을 꺼내기 이하여 3번 롤러에 비스듬히 기대어 2,3번 롤러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있었는데, 컨트롤 박스에서 스위치를 조작하던 직원이 1번 롤러 스위치를 조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번 롤러 스위치를 조작하는 바람에 몸의 균형을 잃고 오른손과 팔이 2, 3번 롤러 사이에 끼게 됨. [사용자측 과실] 컨트롤 박스에서 롤러 스위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숙련공으로서 그 제조과정을 잘 알고 있어 미리 손을 넣을 필요가 없음에도 손을 넣고 있었고, 각 롤러의 작동상황에 주의	30%	부산고법 2003나2130

를 기울려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사고발생경위] 형틀목공이 전기톱이 중앙에 설치도니 작업대에서 전기톱을 이용하여 합판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톱날과 작업대 사이에 합판조각이 걸리는 느낌이 들어 톱날 위에 설치된 톱날덮개를 뒤로 제쳐 놓고 톱날쪽으로 합판을 밀다가 장갑이 톱날에 걸려 손가락이 빨려 들어감. [사용자측 과실] 규정대로 장갑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톱날덮개로 톱날을 덮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철저하게 확인·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숙련된 형틀목공으로서 작업장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톱날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갑을 착용한 채 톱날 덮개를 제쳐 놓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한 과실.	30%	서울고법 2002나64607
[사고발생경위] 목재가공용 둥근 기계톱에서 잘려져 나오는 목재를 검사·포장하고 기계가 정지하면 흩어진 나무조각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잘려진 목재를 반출하는 컨베이어가 정지하자 그 밸트에 낀 나무 조각을 빼내려고 위 컨베이어 밑으로 들어가던 중, 성명 불상의 직원이 전기 스위치를 올려 기계가 작동되어 머리카락이 컨베이어의 체인에 끼었고 이에 오른손을 올려 이를 빼내려다 오른 손목이 컨베이어의 체인과 기어 사이에 들어가 손목이 절단됨. [사용자측 과실] 컨베이어 주변에 나무조각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계를 작동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다른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나무조각을 안전하게 빼내려고 하지 않고 몸을 충분히 낮추지 않은 채 컨베이어 밑으로 들어간 과실	15%	광주고법 2002나6332
[사고발생경위] 고무인 제작에 사용되는 나무의 절단작업을 하던 중, 왼손을 회전하는 전기 톱날에 스침. [사용자측 과실] 작업수행상 필요한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절단할 나무의 양쪽 끝을 잡고 조심스럽게 절단하는 등 손이 회전하는 전기 톱날에 닿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30%	서울고법 2001나50670

[사고발생경위] 목공이 합판을 절단하기 위하여 원형기계 톱날 옆에 설치도니 버팀목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합판을 톱날 방향으로 밀어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합판이 버팀목과 기계 톱날 사이에 빡빡하게 끼면서 얼굴 앞으로 솟아오르자 이를 왼손으로 누르다가 손가락이 회전하는 톱날에 닿게됨. [사용자측 과실] 톱날이 불량임에도 이를 교체하지 않았고, 안전커버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버팀목의 선을 잘못 그려 버팀목과 기계 톱날 사이가 평행을 이루지 않게 하고 작업을 하게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숙련된 목공으로서 버팀목이 잘못 고정되어 있고 기계톱날의 상태가 좋지 않으며, 안전커버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였고, 절단 중인 합판이 위로 솟아오르면 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갖다 댄 과실.	40%	대전고법 2001나4123
[사고발생경위] 선반공이 선반에 강재를 물리고 절삭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강재가 척에서 이탈하면서 맞대기 용접 부분이 떨어져 그 중 한쪽이 머리를 강타함. [사용자측 과실] 강재가 선반척의 구멍보다 굵어 구멍에 끼울 수 없고, 척에만 강재의 끝부분을 물린 상태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어 선반공이 교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기가 임박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하게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숙련된 선반공으로서 위험한 작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세운 이후에 작업을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	30%	서울고법 2001나50861